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입주자모집공고(정정)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정정안내

※ 2023.11.03.(금) 공고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내용(기존 입주자모집공고 p.10)

변경 전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049.9200A	049.4000B	059.9400A	059.8700B	074.9500A	074.4300C	074.4300D	074.9600E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1	2	-	1	-	-	-	-	4
		경기도	1	1	-	1	-	-	-	-	3
		인천광역시	1	2	-	-	-	-	-	-	3
	국가유공자 등		1	1	-	1	-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	-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	1	-	-	-	-	4
	중소기업근로자		1	1	1	-	-	-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50%)		4	6	1	2	-	-	1	1	15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5	1	2	-	-	-	-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20	3	7	1	1	3	3	5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3	-	1	-	-	-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0	1	3	-	-	1	1	22
합계			34	55	8	19	1	1	6	6	130

변경 후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049.9200A	049.4000B	059.9400A	059.8700B	074.9500A	074.4300C	074.4300D	074.9600E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1	2	-	1	-	-	-	-	4
		인천광역시	1	1	-	1	-	-	-	-	3
		경기도	1	2	-	-	-	-	-	-	3
	국가유공자 등		1	1	-	1	-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	-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	1	-	-	-	-	4
	중소기업근로자		1	1	1	-	-	-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50%)		4	6	1	2	-	-	1	1	15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5	1	2	-	-	-	-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20	3	7	1	1	3	3	5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3	-	1	-	-	-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0	1	3	-	-	1	1	22
합계			34	55	8	19	1	1	6	6	130

■ 변경내용(기존 입주자모집공고 p.46)

변경 전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7개)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3,357,257,539,773	676,443,314,407	274,286,934,168	28,487,418,540	10,852,349,920	79,357,808,790	294,818,446,335	4,721,503,811,933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인정/불인정/조정 中 택1)	
택지 가산비	합계	597,766,717,472	
	토목공사비용	23,671,199,31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274,425,850,71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34,486,034,24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2,383,584,80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103,743,430,27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159,056,618,12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 가산비	합계	294,818,446,335	
	구조형식	40,765,656,66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24,525,712,51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21,566,314,36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부	13,029,999,81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97,087,449,54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 보증수수료	11,618,409,75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6,598,616,97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 등	79,626,286,71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변경 후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7개)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175,713,600,378	35,598,333,130	14,442,281,048	1,477,985,716	563,042,178	4,117,245,924	17,163,741,912	249,076,230,285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인정/불인정/조정 中 택1)
택지 가산비	합계	40,562,555,728	
	토목공사비용	5,041,419,7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10,356,377,24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1,255,331,57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525,665,68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4,910,014,74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18,473,746,70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 가산비	합계	17,163,741,912	
	구조형식	2,293,061,9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917,224,76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1,020,035,19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부	2,119,895,69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4,898,692,5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 보증수수료	371,570,69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26,157,6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 층고상향 추가비용	974,804,26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 등	4,142,299,23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청약시 부적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격 청약세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청약 신청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청약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로 부부 동시청약으로 부적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 접수자의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므로,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점제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점제 청약시) 부양가족산정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부적격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5. (일반공급 청약시) 당 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1순위 청약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대원은 2순위 청약 가능)
- ※ 부적격 당첨 방지를 위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 신청 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대표번호(1600-49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견본주택은 사이버건본주택으로(www.hillstate-elife-mj.co.kr)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계약처 방문이 가능하며 계약처 내 전시된 마감재, 모형도 등 관람이 가능합니다.
- 계약처 방문은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원칙이며(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방문은 사이버건본주택(www.hillstate-elife-mj.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여 계약처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계약처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계약처 방문이 불가합니다.

※ 계약처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및 계약처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계약처 운영자(진행요원 등)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처 관람, 서류검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변경으로 통보가 불가할 경우 당첨자 본인 책임임)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분양상담전화(☎1600-499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유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우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 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1.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수도권은 3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월거민 및 도시 재생 부지제공자, 장애 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월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내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계약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elife-mj.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	기간	관련 법령
전매 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 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2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11.22.)부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사업 주체는 「주택법」 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기합니다.

- ※ 거주 의무 :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 사업 주체는 거주유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유무자가 거주유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을 명기하며, 거주유무자는 거주유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대상자 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다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청약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및 구입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일 정	11월 13일(월)	11월 14일(화)	11월 15일(수)	11월 16일(목)	11월 22일(수)	2023년 11월 23일(목) ~ 11월 27일(월)	2023년 12월 04일(월) ~ 12월 06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계약(별도 안내)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계약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사 계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당사 계약처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사업과 - 17801호(2023.11.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사업명 : 문정동136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사업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총 1,2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반분양 299세대(조합원 분양 888세대, 임대주택 70세대, 보류지 8세대 포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0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일정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계
민영	2023000562	01	049.9200A	49A	049.9200	18.9427	68.8627	36.3482	105.2109	27.9806	72	7	7	12	2	6	34	38	10

주택	02	049.4000B	49B	049.4000	18.5262	67.9262	35.9696	103.8958	27.6000	112	11	11	20	3	10	55	57	8
	03	059.9400A	59A	059.9400	22.5127	82.4527	43.6440	126.0967	33.5026	21	2	2	3	0	1	8	13	18
	04	059.8700B	59B	059.8700	20.8343	80.7043	43.5930	124.2973	32.7920	43	4	4	7	1	3	19	24	8
	05	074.9500A	74A	074.9500	26.4924	101.4424	54.5733	156.0157	41.2184	6	0	0	1	0	0	1	5	6
	06	074.4300C	74C	074.4300	28.4059	102.8359	54.1946	157.0305	41.7846	6	0	0	1	0	0	1	5	1
	07	074.4300D	74D	074.4300	28.3959	102.8259	54.1946	157.0205	41.7806	19	1	1	3	0	1	6	13	3
	08	074.9600E	74E	074.9600	26.9150	101.8750	54.5805	156.4555	41.3942	17	1	1	3	0	1	6	11	3
	09	074.9600F	74F	074.9600	26.8950	101.8550	54.5805	156.4355	41.3862	3	0	0	0	0	0	0	3	-
	합계										299	26	26	50	6	22	130	169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기준)의 표기방식은 종전(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 위 공급대상의 면적은 단수를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의 합계와 설계상의 면적 및 대지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측량, 공부 정리, 실측 정리, 등기, 인접 건물 대지의 영향 등 사업 진행의 과정에서 표기되는 소수점의 자리가 변동되거나 일부 면적이 조정되어 위 공급대상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격은 별도 정산하지 않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뜻합니다. (지상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이 최저층)

※ 위 공급대상의 주거전용면적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 세대 내부 안목치수로 산정된 면적입니다.

※ 위 공급대상의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중동출입구 등의 면적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배분한 면적으로 해당 세대 또는 각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공급대상의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은 관리사무소 및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전, 전기실 등의 면적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배분한 면적입니다.

※ 위 공급대상의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 면적이며, 계약면적은 주택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의 합계 면적입니다.

※ 위 공급대상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분된 대지면적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주택공급면적 합계 대비 각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각 세대에 배분한 면적입니다.

※ 공고일 현재 예정된 입주 개시 시점은 2024년 9월이나 추후 인허가, 공정 등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세대수	동별/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50%)			잔금 (4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20%)	3차(20%)	
									계약시	2024.02.15.	2024.04.15.	2024.06.17	입주지정일
049.9200A	49A	72	102동 - 1~5호, 8호 103동 - 1호, 4~5호 108동 - 1~2호, 5호 114동 - 3~5호	1층	7	399,143,000	336,457,000	735,600,000	73,560,000	73,560,000	147,120,000	147,120,000	294,240,000
				2층	7	404,297,000	340,803,000	745,100,000	74,510,000	74,510,000	149,020,000	149,020,000	298,040,000
				3~4층	15	409,398,000	345,102,000	754,500,000	75,450,000	75,450,000	150,900,000	150,900,000	301,800,000
				5~9층	29	411,406,000	346,794,000	758,200,000	75,820,000	75,820,000	151,640,000	151,640,000	303,280,000
				10~14층	8	413,577,000	348,623,000	762,200,000	76,220,000	76,220,000	152,440,000	152,440,000	304,880,000
				15~18층	6	415,530,000	350,270,000	765,800,000	76,580,000	76,580,000	153,160,000	153,160,000	306,320,000
049.4000B	49B	112	102동 - 6~7호	1층	8	392,903,000	331,197,000	724,100,000	72,410,000	72,410,000	144,820,000	144,820,000	289,640,000

			103동 - 2~3호 108동 - 3~4호 114동 - 1~2호	2층	8	397,949,000	335,451,000	733,400,000	73,340,000	73,340,000	146,680,000	146,680,000	293,360,000
				3~4층	16	402,941,000	339,659,000	742,600,000	74,260,000	74,260,000	148,520,000	148,520,000	297,040,000
				5~9층	40	405,003,000	341,397,000	746,400,000	74,640,000	74,640,000	149,280,000	149,280,000	298,560,000
				10~14층	25	407,119,000	343,181,000	750,300,000	75,030,000	75,030,000	150,060,000	150,060,000	300,120,000
				15~18층	15	409,018,000	344,782,000	753,800,000	75,380,000	75,380,000	150,760,000	150,760,000	301,520,000
059.9400A	59A	21	101동, 110동 - 1호, 4~7호 106동 - 6~8호 111동 - 1호, 5~8호	1층	9	476,084,000	401,316,000	877,400,000	87,740,000	87,740,000	175,480,000	175,480,000	350,960,000
				2층	12	482,216,000	406,484,000	888,700,000	88,870,000	88,870,000	177,740,000	177,740,000	355,480,000
059.8700B	59B	43	101동, 110동 - 2~3호 106동, 111동 - 3~4호	1층	3	465,612,000	392,488,000	858,100,000	85,810,000	85,810,000	171,620,000	171,620,000	343,240,000
				2층	8	471,581,000	397,519,000	869,100,000	86,910,000	86,910,000	173,820,000	173,820,000	347,640,000
				3~4층	16	477,604,000	402,596,000	880,200,000	88,020,000	88,020,000	176,040,000	176,040,000	352,080,000
				5~6층	16	479,992,000	404,608,000	884,600,000	88,460,000	88,460,000	176,920,000	176,920,000	353,840,000
074.9500A	74A	6	104동 - 4호, 112동 - 3호 109동, 113동 - 3~4호	1층	6	574,188,000	484,012,000	1,058,200,000	105,820,000	105,820,000	211,640,000	211,640,000	423,280,000
074.4300C	74C	6	112동, 113동 - 2호	1층	1	570,932,000	481,268,000	1,052,200,000	105,220,000	105,220,000	210,440,000	210,440,000	420,880,000
				2층	1	578,529,000	487,671,000	1,066,200,000	106,620,000	106,620,000	213,240,000	213,240,000	426,480,000
				3~4층	2	586,180,000	494,120,000	1,080,300,000	108,030,000	108,030,000	216,060,000	216,060,000	432,120,000
				5~7층	2	589,273,000	496,727,000	1,086,000,000	108,600,000	108,600,000	217,200,000	217,200,000	434,400,000
074.4300D	74D	19	104동, 109동, 112동, 113동 - 2호	1층	3	573,700,000	483,600,000	1,057,300,000	105,730,000	105,730,000	211,460,000	211,460,000	422,920,000
				2층	3	581,297,000	490,003,000	1,071,300,000	107,130,000	107,130,000	214,260,000	214,260,000	428,520,000
				3~4층	6	588,948,000	496,452,000	1,085,400,000	108,540,000	108,540,000	217,080,000	217,080,000	434,160,000
				5~6층	7	591,986,000	499,014,000	1,091,000,000	109,100,000	109,100,000	218,200,000	218,200,000	436,400,000
074.9600E	74E	17	104동, 109동, 113동 - 1호	2층	3	577,661,000	486,939,000	1,064,600,000	106,460,000	106,460,000	212,920,000	212,920,000	425,840,000
				3~4층	6	585,204,000	493,296,000	1,078,500,000	107,850,000	107,850,000	215,700,000	215,700,000	431,400,000
				5~7층	8	588,242,000	495,858,000	1,084,100,000	108,410,000	108,410,000	216,820,000	216,820,000	433,640,000
074.9600F	74F	3	104동, 109동, 113동 - 1호	7~8층	3	588,404,000	495,996,000	1,084,400,000	108,440,000	108,440,000	216,880,000	216,880,000	433,76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함 금액으로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 및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송파구청 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 되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확정품목(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욕실, 주방, 현관)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확정품목(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 공사를 일괄 진행하였으므로 분양대금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공정상 공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비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사전점검 목적의 방문 외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아파트 내·외부 확인을 위해 단지 내 건설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종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 식재수종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049.9200A	049.4000B	059.9400A	059.8700B	074.9500A	074.4300C	074.4300D	074.9600E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1	2	-	1	-	-	-	4
		인천광역시	1	1	-	1	-	-	-	3
		경기도	1	2	-	-	-	-	-	3
	국가유공자 등		1	1	-	1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	1	-	-	-	4
	중소기업근로자		1	1	1	-	-	-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50%)	4	6	1	2	-	-	1	1	15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5	1	2	-	-	-	-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20	3	7	1	1	3	3	5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3	-	1	-	-	-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0	1	3	-	-	1	1	22
합계		34	55	8	19	1	1	6	6	13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문 1589 (특별공급 운영 관련 협조요청)과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당첨),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7 1125 2105 1316">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미성년 자녀 4명	35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5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0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7,811,342원	7,622,057원~9,146,467원	8,040,493원~9,648,590원	8,701,640원~10,441,967원	9,362,787원~11,235,343원	10,023,934원~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9,113,233원	7,622,057원~10,670,878원	8,040,493원~11,256,689원	8,701,640원~12,182,295원	9,362,787원~13,107,900원	10,023,934원~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10,415,123원	9,146,468원~12,195,290원	9,648,591원~12,864,787원	10,441,968원~13,922,622원	11,235,344원~14,980,458원	12,028,721원~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 (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11. 03. (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가능)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천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70%) 및 추천제(3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단, 2순위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에도 청약 불가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1.1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계약처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당사 계약처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1.1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3.11.15(수) 09:00~17:30		
2순위		2023.11.16(목) 09:00~17:30			

-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을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계약처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정발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미디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22.(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2.04.(월)~2023.12.06.(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당사 계약처
	2순위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당사 계약처(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elife-mj.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22.(수) ~ 2023.12.0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1.2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40%, 그 외 지역 40% 이하 범위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0%를 가점제로, 나머지 3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70%, 그 외 지역 40% 이하 범위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천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청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청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청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 계약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청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사 계약처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당사 계약처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청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청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청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청된 주택은 당청이 취소(재당청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청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청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청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청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청자는 부적격당청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청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청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청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청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청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청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청자 중 부적격당청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에게 업무진행 관련(예비입주자 추천일정 등) 안내와 관련하여, 청약시 등록한 연락처(전화, 주소 등)를 기준으로 안내드리오니 변동이 있으면 예비입주자께서는 **사업주체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연락받지 못한(부재, 번호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청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청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청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청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천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청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비고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2023.11.23.(목) ~ 2023.11.27.(월) 10:00 ~ 16:00	당사 계약처(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또는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당첨자격 검증 및 서류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 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과거 전입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주소변동 내역 /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본인	· 당사 계약처에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 기준표	-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일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계약처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계약처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정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양가족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생애최초 소득 증빙서류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본인	·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 인정불가,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 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①, ②, ③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② 소득금액 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서 및 확인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직인날인)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입만 인정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공고일 이전 신고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법인 결산서	①,②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소득세,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무직자, 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당사 계약처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폐업 증명서	① 접수장소(당사 계약처) ② 세무서 ※ 해당 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중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9조(소득기준 심사방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서 증빙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위촉(재직)증명서(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직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 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한 경우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주택공급 신청자 단신부임을 증빙하기 위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해외근로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전세피해 확인서류	청약자(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해당 서류</th> <th>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임대차계약서</td> <td>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td> </tr> <tr> <td>낙찰 증빙서류</td> <td>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td> </tr> <tr> <td>등기사항증명서</td> <td>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td> </tr> <tr> <td>채권자 확인서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td> </tr> </tbody> </table>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당 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산정기준표	-	·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 여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양가족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 인정불가,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계약처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동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동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VII 계약일정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년 12월 04일(월) ~ 12월 06일(수) 10:00 ~ 16:00	당사 계약처(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입금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료(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인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 유형별 추가 보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자격 서류검수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한 서류 ※ 모든 당첨자는 부적격 사전 검수를 완료해야만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불가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분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관련 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자금조달계획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재산정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제외)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요건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11호 신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201호(2023.05.09.)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소형·저가주택등의 산정방법 준용
- 인정대상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경우(임차주택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처분(매각 등)한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당첨시 제출서류 : ① 임대차 계약서, ② 낙찰 증빙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③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④ 임차주택 경·공매 채권자 확인 가능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적용사례

구분	보유예시	무주택 인정여부	무주택기간 인정 기간
낙찰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청약신청 시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낙찰주택을 처분(매각 등) 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매도, 무주택 2년 경과 후 청약신청 시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201-910025-65605	문정동136번지일원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센터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계약처에서 수납 불가)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계약 시 입금증을 당사 계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처에서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홀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홀길동’)
- ※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이버건분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대상이라도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청약 및 공급계약 체결 전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의 피해가 인정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양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 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형용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이버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1) 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2.15.	입주지정일
49A	9,898,000	989,800	989,800	7,918,400
49B	11,532,000	1,153,200	1,153,200	9,225,600
59A	11,656,000	1,165,600	1,165,600	9,324,800
59B	12,607,000	1,260,700	1,260,700	10,085,600
74A	12,005,000	1,200,500	1,200,500	9,604,000
74C	12,017,000	1,201,700	1,201,700	9,613,600
74D	12,019,000	1,201,900	1,201,900	9,615,200
74E	12,267,000	1,226,700	1,226,700	9,813,600
74F	12,285,000	1,228,500	1,228,500	9,828,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후방양 단지(2023년 10월 말 기준 공정을 62.89%)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사업주체에게 발코니 비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자 본인이 자납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타사 제품 포함)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사이버건본주택 및 계약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49A/49B/59A/59B/74A/74C/74D/74E/74F 타입의 발코니 확장형은 확장형 평면에 따라 창호, 주방가구 및 확장발코니로 시공되며, 침실1(안방)에 전동빨래건조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에 따른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채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 안내
 - 기본형 세대 발코니(비확장 발코니)는 창호공사 및 방수, 타일, 도장, 조적, 주방가구공사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아래와 같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기본형 발코니(비확장 발코니) 공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된 비용입니다.

주택형	49A	49B	59A	59B	74A	74C	74D	74E	74F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	5,844,930원	4,996,384원	7,221,614원	6,444,747원	7,192,452원	7,322,401원	7,139,114원	7,331,506원	7,240,027원

3)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확장/추가선택품목 분양대금	하나은행	201-910025-69105	현대엔지니어링(주)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센터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계약처에서 수납 불가)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계약 시 입금증을 계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처에서 수납 불가)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 ※ 상기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사업주체인 문정동13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관하며,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및 DL이앤씨(주) 외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이므로 각각 납부하여야합니다.)

■ 확정품목 - 시스템 에어컨(전실 시공)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2.15.	입주지정일	
LG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능 미포함)	3개소_거실/침실1(안방)/침실2 (실내기3,실외기1)	49A/49B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4개소_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4,실외기1)	59A/59B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4개소_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4,실외기1)	74A/74C/74D/74E/74F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 본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2023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 62.89%)로 시스템 에어컨(타입별 설치대수 상이)이 일괄 시공됨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미선택이 불가하므로 계약 및 입주예정자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진행 시 시스템 에어컨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자납하셔야 합니다.
- 현재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는 LG이나 향후 제조사 및 브랜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품품목의 변동(생산중단, 신제품 생산, 조달업체의 파산 등) 시 동등 수준의 제품을 적용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등기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LG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2.15.	입주지정일		
주방 고급화	상판/ 벽체 칸스톤 주방가구(싱크볼) 및 싱크수전 업그레이드(GESSI) / 전해수 살균 수전 추가	49A	4,690,000	469,000	469,000	3,752,000	
		49B	5,410,000	541,000	541,000	4,328,000	
		59A	4,870,000	487,000	487,000	3,896,000	
		59B	4,490,000	449,000	449,000	3,592,000	
		74A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74C/74D	5,110,000	511,000	511,000	4,088,000	
		74E/74F	5,180,000	518,000	518,000	4,144,000	
주방 가전 고급화1	하이브리드 쿡탑(SK매직)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전 타입	500,000	50,000	50,000	400,000
주방 가전 고급화2	식기세척기(SK매직)	12인용 기준	전 타입	910,000	91,000	91,000	728,000
주방 가전 고급화3	비스포크 냉장고 + 비스포크 냉동고 +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 TL장	49A/49B (*TL장 제외)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59A/59B/74A/74C/74D/74E/74F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 주방 고급화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주방 상판만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시공되며, 벽체는 타일로 시공됩니다.
- 주방 상판/벽체 추가선택품목의 색상 및 구성은 각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고급화 및 주방 가전 고급화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 미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방 가전 고급화3 추가선택품목 중 TL장은 타입별 크기 상이할 수 있으며 59A/59B/74A/74C/74D/74E/74F 주택형에만 적용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욕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2.15.	입주지정일
욕실 고급화	스마트 욕실 환풍기 / 수전류(LIDDEL), 세면기(AMERICAN STANDARD), 액세서리 업그레이드(LIDDEL)	49A/49B	890,000	89,000	89,000	712,000
	샤워부스 고급화(플파티션) / 스마트 욕실 환풍기 / 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 수전류(LIDDEL), 세면기(AMERICAN STANDARD), 액세서리 업그레이드(LIDDEL)	59A/59B/74A/74C/74D/74E/74F	2,120,000	212,000	212,000	1,696,000

- 욕실 고급화 선택시 욕실 세면기(수전포함)가 변경됩니다.
- 욕실 고급화 선택시 샤워부스 및 스마트 샤워기 캔버스는 59A/59B/74A/74C/74D/74E/74F 주택형의 욕실2 기존 샤워부스 및 샤워기 위치에서 사양이 변경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현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4.02.15.	입주지정일
현관 고급화	중문(스윙) / 마그네틱박스+UV 살균 / 에어브러쉬(청소솔)	49A/49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중문(1슬라이딩) / 마그네틱박스+UV 살균 / 에어브러쉬(청소솔)	59A/59B/74A/74C/74D/74E/74F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현관 고급화 선택 시 마그네틱박스+UV 살균, 에어브러쉬(청소솔)이 신발장 내에 설치되어 신발장 선반 공간의 일부가 설치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상기 확정/추가선택품목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사이버건본주택 및 계약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일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색상은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 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마감재나 수전, 위생도기, 기타설비 등은 녹색건축 인증관련 배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녹색건축 인증 등을 충족하는 품목을 별도 설치 해야 합니다.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침실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걸레받이	단열 + 석고보드 + 미장, 발코니벽체도장, 건식벽체
3) 천장	초배지, 천장지, 천장도장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발코니 천장도장
4)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전기배선, 전기콘센트, 전기스위치, 매입박스
5) 욕실	천정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폰, 욕조,양면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조절,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선, 전기배관, 통신배관, 통신배선
6) 주방	주방가구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주방TV,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등 주방 가전일체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전기배선, 통신배관, 통신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7) 일반가구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불박이장, 시스템장)	-
8) 창호	-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내창, 현관방화문
9) 기타사항	발코니수전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49A	49B	59A	59B	74A	74C	74D	74E	74F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1,027,225	20,826,173	24,450,759	23,944,966	28,971,949	29,315,944	29,367,077	29,095,500	29,089,788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풍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계약처에서 확인바랍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9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지역공동체 문화센터, 독서실/북카페, 면역증진실, 세대창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비실(2개소) 등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지하2층	2.7m (단, 101,105,106,107,110,111,112동 구간 등 지하 2층 주차장 제외, 주차공간은 2.1m 이상, 그 외 일부구간은 2.3m 이상)	2.7m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사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7개)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175,713,600,378	35,598,333,130	14,442,281,048	1,477,985,716	563,042,178	4,117,245,924	17,163,741,912	249,076,230,285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인정/불인정/조정 中 택1)
택지 가산비	합계	40,562,555,728	
	토목공사비용	5,041,419,76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10,356,377,24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1,255,331,57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525,665,68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4,910,014,74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경비	18,473,746,70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 가산비	합계	17,163,741,912	
	구조형식	2,293,061,9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917,224,768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1,020,035,19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부	2,119,895,69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4,898,692,5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 보증수수료	371,570,69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26,157,64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층 충고상향 추가비용	974,804,26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 등	4,142,299,23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	삼창감정평가법인	137,947,273,160	135,151,044,650
	대한감정평가법인	132,354,816,140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소방 / 정보통신	전기
회사명	(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세정이에프씨	(주)더베스트이앤씨
감리금액	3,246,880,000원	700,000,000원	681,818,181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시행자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자	시공회사명	
상호명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엔지니어링(주)	디엘이앤씨(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54,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법인등록번호	244271-0009542	110111-2153015	110111-7736808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 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3-101-0004200호	₩ 149,445,480,000원정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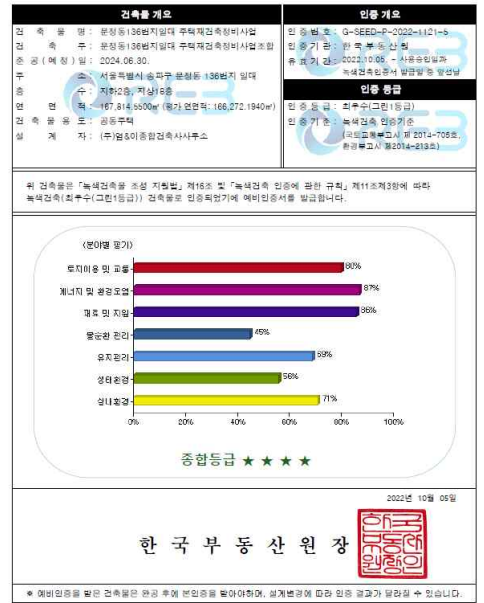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적용여부</th> <th>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th> </tr> </thead> <tbody> <tr> <td>고기밀 창호</td> <td>적용</td> <td>·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td> </tr> <tr> <td>고효율기자재</td> <td>적용</td> <td>·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전동기) ·표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변압기)</td> </tr> <tr> <td>대기전력차단장치</td> <td>적용</td> <td>·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td> </tr> <tr> <td>일괄소등스위치</td> <td>적용</td> <td>·세대 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td> </tr> <tr> <td>고효율조명기구</td> <td>적용</td> <td>·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td> </tr> <tr> <td>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td> <td>적용</td> <td>·부대시설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td> </tr> <tr> <td>실별온도조절장치</td> <td>적용</td> <td>·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td> </tr> <tr> <td>절수설비</td> <td>적용</td> <td>·세대내 수도꼭지 및 샤워수전은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td> </tr> </tbody> </table>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전동기) ·표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수도꼭지 및 샤워수전은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 부위의 창호는 KS F 2292에 의한 2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전동기) ·표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변압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실별로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수도꼭지 및 샤워수전은 관련법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동등 수준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X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p>공통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사이버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p>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각종 홍보물은 2023년 08월 01일 사업시행계획 경미한변경(5차)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단, 일부 홍보물(외관디자인 등)은 경미한 변경(5차) 이전의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외관디자인은 공공건축가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사이버건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p>사업지 및 주변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문정동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정동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문정동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내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정동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주택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인·허가, 설계 등의 변경 및 사업일정 등에 따라 당 사업지와 인접한 도로의 폭, 선형,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단지 외곽 벽면 노출, 단지 레벨, 도시계획도로 레벨,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방식,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상가 및 주차장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홍보물 배치도 등에 표현)는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 및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 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공원, 종교시설 등은 단지 외부 시설이며, 개발주체의 계획 및 향후 공원 심의 등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버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 15m도로 및 남동측 9m도로 및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주동(102,103,104,105,106,108동은 주변지형보다 낮아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근린공원/어린이공원/학교/공공청사/문화 및 노유자시설 등)은 존치 또는 각 시행주체가 계획 및 추진중인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인허가 진행 또는 기타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으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서 시행하는 군사작전 및 전투훈련 등에 따른 전투·수송기 등의 비행으로 인한 비행소음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위치, 군사작전 및 전투훈련 등의 사항은 군 관계기관의 보안사항이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기부채납건축물 준공 시점은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p>사이버 건본주택 및 계약처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건본주택을 통해 청약·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자료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각 세대의 가구/ 각종 내부 마감재 등은 실제 색상/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 위치 및 디자인 등이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사이버건본주택,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유치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단지 주변 현황,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계약처 내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내 모형 및 분양홍보물 등에 표현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품특화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입면디자인(저층부 석재/타일 및 도장 색상/디자인 포함),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주출입구, 색채, 물딩, 창호, 문주, 옥상장식물,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조명설치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VR, 카다로그 등)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사이버 건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모형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에 미표기된 상가입점 전후 외부간판, 옥상 실외기, 급배기 덕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에 전시된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품목이며,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 창호류 및 가전류 등은 품귀, 품질, 단종, 제조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공 및 하자 보수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실외기 루버창, 하향식 피난구 등은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 등이 동일 타입에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변단지 및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공공보행통로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환경(소음 등)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펜스, 조경,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도로 및 단지내 도로보다 낮거나 유사한 레벨에 인접한 주동(102, 103, 104, 105, 106, 108, 113, 114동 등) 저층부의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환경(소음 등)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내 부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차량용 램프의 경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동출입구, 코어,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임대주택 또는 상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식재 위치 및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선크(계단 및 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한국전력공사 인입개폐기 및 변압기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 냄새, 사생활 침해, 환경(소음 등)관련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입주 후 일부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탈착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 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송파구 아파트 담장개방화(담장허물기) 관련 단지 내외부 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담장은 조경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피난, 구조활동을 위한 공기 안전매트 설치공간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해당공간에는 조경식재가 일부 제한되므로 저층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113동 주변 제외)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음식물쓰레기 저장시설 4개소, 재활용품보관소 9개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접근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보육시설, 조경시설, 수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p>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 분진에 의해 피해 및 사생활 침해, 환경(소음 등)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철편, 연료전지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철편, 우수조실 등에 각종 장비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은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모든 동은 주출입구가 필로티 또는 PIT진입 형태로 설계되어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해방지와 빗물 재활용을 위해 우수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동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6동 근린생활시설 전기인입용 한국전력 PAD는 101동, 106동 사이 조경부위 설치 될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제조사와 모델, 형태 및 사양, 프레임 및 창짝 규격, 색상/디자인, 유리/하드웨어 사양, 분할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4g입니다. • 당 해당물에 대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을 받지 않으나 그에 준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계획상 탐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 등의 침해,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문주 및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102,103,106,108,110,111,114동은 디자인 특화동으로 커튼월록 및 금속 외장마감으로 구성되며, 이와 근접한 동 및 해당동은 이에 따른 빛반사 등의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106동, 114동 및 어린이집과 인접한 110동 저층부 세대에는 당해시설 이용으로 인한 상가로부터의 소음, 미관저해 및 주방배기(악취) 및 보일러 연도 배기(그을음 및 냄새) 등에 의해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 옥상난간대, 실외기 배치 등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보진입 시 근린생활시설과 주동 진입 동선이 같으므로 불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107,110,112,114동 하부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문주와 인접한 106,110동의 저층세대는 문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눈부심에 의한 빛공해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인접한 101,102,104,105,106,110동 등 저층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시 경광등으로 인한 소음과 빛공해, 진동, 분진 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행동로와 인접한 102,104,107,108,109,110,112,113동 등 저층세대의 경우,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옥상층에는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본공사 시 수량,위치,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 장치는 101동, 103동, 104동, 107동, 111동, 114동, 지하 2층 제연철편에 약 4개소 설치되며 이는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야간경관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세대 외벽에 장식물 설치 또는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 서울시 인허가 조건에 따른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마감)	<p>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여건등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으니 1층 등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지하주차장 바닥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킹시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형성되었으며, 102,103,104,108,109,113,114동은 지하 1개층으로 지하2층과 직접 연결되고, 101,105,106,110,111,112동은 지하 2개층으로 설치돼 각 동별 주차장 이용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설비배관 하부 등의 유효높이(통로기준 지하1층 및 지하2층(110,111,112동 제외): 2.7M, 주차구획기준 지하1,2층: 2.1M)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여성전용, 장애인용, 전기차(충전시설 포함)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최초 사업승인 기준)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철제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천정 마감 유무는 구간별로 다를 수 있고, 시설물(집수정, D.A, 환풍 등)의 위치, 크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출입구와 인접한 지하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별도 구획되어 있으나, 출입구를 공유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시 동선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고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보행자 동선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 구조형식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선, 배관 및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채광 및 출입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선큰, D/A, 제연환풍, 계단)은 실시공시 위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무인택배함은 설치되는 제품에 따라 위치 및 개소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함은 주차장또는 동 출입구부근 설치에 따라 다소 통행에 불편할수도 있으며, 동당 1개소씩 설치됩니다.)
	부대 시설 근린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단지의 부대복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컬러 등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세대별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간섭위치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내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포장, 저층부 석재 및 타일, 외부 색채, 주동 출입구, 문주 등의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세부적인 위치와 형태, 재료는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출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부대복리 시설과 인접한 동들의 저층부 세대에는 당해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미관저해 및 배기(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 옥상난간대, 실외기 배치 등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세대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별 설치위치 및 이용동선의 형평성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면역공방 등은 인·허가에 따라 공공개방시설로 설계되었으므로 단지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상가/부대복리시설의 시설물(실외기실 등)의 위치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동 실외기실은 내부에 근린생활시설용 전기,통신 인입 판넬이 설치 됩니다.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가구, 기구, 비품류, 집기 등은 시공사 지급 품목이 아니며, 평, 입, 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가구 및 기구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합은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송파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인·허가 및 운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장기 무상임대에 따라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임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용 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정압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화조 배기탑, 한전개폐기, 상가/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일부동 전후면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냄새, 해충 등이 발생되어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받을 수 있으니 단지모형, 분양홍보물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2층 엘리베이터홀 및 지하층 세대 창고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엘리베이터 홀 설치)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 일부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설비물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고, 태양광 집광판 등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는 각 동별 세대창고 공간이 시공되며(선반, 캐비닛 등의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체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창고를 이용할 경우 보관용품이 습기 등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차함/공용본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방범, 보안, 안전을 설치된 CCTV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 집광판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외부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아래와 같이 동별, 코어별로 구동방식이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L 타입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이동용 셔틀엘리베이터 - MR 타입 : 주거동 기본으로 20인승 105min/m 이며 4동 (1,2호), 5동, 7동, 9동(1,2,3호), 12동, 13동(1,2,3호)은 20인승 120 min/m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상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5,6호 세대/ 2동 1호세대/ 3동 3,4호세대/ 6동 6호 세대 등 •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고정창, 자동폐쇄장치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의 종류 및 사이즈는 동별/층별 상이합니다. • 아파트 계단실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일부 층은 인허가도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현관문 또는 천정에는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설비장치가 주동옥상 등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4~5동, 107동, 110~114동은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하부에는 펌프실, 발전기실 및 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111동 동측 인근)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일부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나 또는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106동,

		<p>113동 인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세대 창고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추후 입주시점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케이블 등 중계기는 특정동 옥상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사이버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준층 세대는 천정고 2,400mm로 계획되었습니다. 실 시공시 기계 및 전기 설비 간섭으로 인해 일부 천장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부착으로 내부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는 기계 설비 간섭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은 다용도(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건조기, 가스보일러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는 평면 구조의 문제로 분양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승인 및 착공용 도서와 실제 시공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이버모텔하우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위 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발코니는 축벽에 면하거나 축세대의 타입에 따라 내부 면적이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확장발코니에는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 및 단열재, 마감재 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동일 평형에서도 위치와 개수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상이 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천정형 에어컨 응축수를 선홍통으로 유도 배수하는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하드웨어, 유리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아파트 외관 컨셉을 반영하여 창호에 칼라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분양 세대 발코니 창호는 LX로 시공됩니다. (단, 주방 발코니 터닝도어 제외)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사이버건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수전이 있는 발코니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며,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형벌, 층별로 상이하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고,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피난구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단위세대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해서 기본형 평면의 경우 침실, 발코니 등이 너무 협소해 실사용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전원(Ex. 하이브리드 쿡탑, 비스포크 外)은 기본타입(벽체)기준하여 시공하며 시공 기준은 공배관(전선 미입선)만 시공되어 집니다. • 인허가 조건에 따라 타입별 가구 수량 및 길이가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및 침실 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4C/D, 74E/F 타입의 경우, 인허가 조건에 따른 발코니 위치의 변화가 있어 동일한 전용면적이지만 확장후 침실2,3의 크기가 상이하고,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유무에 따라 스라브 및 벽체의 돌출 등으로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간 일체형 창호 특성상 열리는 창호를 제외하고는 고정창으로 설치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관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부속물(디지털도어록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사이버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반침장, 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도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74C/D, 74E/F 타입의 경우, 인허가 조건에 따른 발코니 위치의 변화가 있어 타입별 침실2,3의 크기가 상이하므로, 타입별 불박이장의 설치위치 및 사이즈가 상이하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 스톤/ 천연 가공석 (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천연 가공석, 타일, 마루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동급수준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 스톤/ 천연 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사이버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사이버건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 스톤/ 천연 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등, 콘센트, 등기구, 월패드, 감지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위치 이동이 될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건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각 실별 추가선택품목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각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 벽체 추가선택품목 품목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청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과 일반분양 세대간 기본 제공품목이 일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청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 계 설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개별난방이 적용됩니다. • 세대 욕실은 벽걸이형(양변기) 총상배관과 바닥배수구 총하형 공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 주방배기 및 욕실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약세서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하게 되며, 형별 타일 등 마감재 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본 시공 시 사이버건본주택과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시공 시 관련법규 혹은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에 제연을 위한 소방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는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은 가스차단기에서 마감처리되며, 그 이후는 입주자 설치 분입니다. • 사이버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수건선반 등), 욕실 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 되며, 이로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분배기 및 바닥배수 트랩 등이 시공되어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건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소화기 제어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방발코니 천장 높이가 건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생활습관에 따라 새시,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건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사양,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장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환기캡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해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 화장실 천장내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아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오티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마감재 색채와 그래픽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 및 해당 관청과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사 또는 인근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이버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향후 분양권 전매시 매수인은 총 공급금액의 10%이상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11월 03일(금)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2023년 11월 13일(월)
일반공급	1순위(해당) 신청	2023년 11월 14일(화)
	1순위(기타) 신청	2023년 11월 15일(수)
	2순위 신청	2023년 11월 16일(목)
당첨자발표		2023년 11월 22일(수)
당첨자 서류제출		2023년 11월 23일(목) ~ 2023년 11월 27일(월)
정당계약		2023년 12월 04일(월) ~ 2023년 12월 06일(수)

총 1,265세대(일반분양 299세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 계약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2,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108호

■ 분양문의 : 1600-499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대표번호(1600-4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